[별표 1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관한 재계약 요건

입주자 자격	소득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라목, 사목, 자목, 차목 및 카목[종전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1호 카목을 포함한다]과 제2호 다목부터 마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75퍼센트 이하(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타목과 제2호 가목 및 동 규칙 제14조제3항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퍼센트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나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소득요건의 150퍼센트 이하